

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
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
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원감희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1월 10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언택트(Untact) 문화 확산에 따라 비대면 물류 서비스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, 지역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,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5조)
-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(안 제6조)
-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명시함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노학)

가. 제출배경

-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보여 온 비대면 서비스 및 디지털 플랫폼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·산업·기술·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(Untact) 서비스의 확대와 디지털 경제로의 진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
-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라 비대면 물류 서비스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, 농수산물 유통 분야로도 큰 확산세를 보임
- 농축수산물의 온라인쇼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, '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'19년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음(67% ↑)
 - 인터넷쇼핑 거래액 : ('19년) 1,150,790백만원 → ('20년) 1,804,663백만원 (57% ↑)
 - 모바일쇼핑 거래액 : ('19년) 2,572,258백만원 → ('20년) 4,408,441백만원 (71% ↑)
- 이에 따라, 전자상거래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, 유통과정 축소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저렴한 가격,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내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

나. 주요 검토내용

1) 상위법령에 대한 저촉여부에 대하여

-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·3)로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3)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제2항제3호에서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음

하고 있는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며,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음

○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구 분	조 례 명	제정일자
울 산 광 역 시	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	2021.05.20
충 청 남 도	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08.17
전 라 남 도	전라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	2020.11.26
경 상 남 도	경상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	2021.09.30

2)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3조는 농산물 판로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,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- 안 제5조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목표 및 방향,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하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-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
- 안 제7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설·운영, 교육 및 컨설팅 사업, 입점상품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사업, 농산물 운송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

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
- 이를 통해 농산물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시간적·공간적 제약을 없애 새로운 시장을 창출, 유통의 효율성과 지역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아울러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,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,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